

'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3년 11월 20일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11월 20일

3. 제안이유

- '93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,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였으나,
- 주요사업시행 변경과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등으로 인하여 재산의 취득 및 교환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것임.

4. 주요골자

- 공유재산의 취득 및 교환

가. 재산취득

○ 농촌진흥원 저온저장고증축

- 청주시 북대동 261-1번지 농촌진흥원내 조립식 판넬구조 1동 52.8㎡

○ 농촌진흥원 육천포도시험장 안내 및 경비실신축

- 육천군 청성면 산계리 102-5번지 포도시험장내 세멘벽돌 스투브구조 1동 40.0㎡

나. 재산의 교환

○ 교환 취득(경찰청소관재산) : 내역별첨

- 청주시 북대동 529-15번지의 24필지 39,783m²

○ 교환 처분(청주, 충주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부지 및 건물) : 내역별첨

(토지) _____ 18필지 33,012m²

┌ 청원군 가덕면 시동리 206-20외 4필지 24,514m²

└ 충주시 가주동 1-7번지의 12필지 8,498m²

(건물) _____ 15동 3,440.52m²

┌ 청원군 가덕면 시동리 206-20외 4필지내 8동 2,064.18m²

└ 충주시 가주동 1-7번지의 12필지내 7동 1,376.34m²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'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(안)을 검토한바,

이는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주요사업시행변경등 재산의 취득 및 교환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것으로

○ 취득재산에 있어 농촌진흥원 저온저장고의 증축과 옥천포도시험장 안내 및 경비실 신축을 하려는 것으로 이는 국민식생활 향상과 건강을 위주로 하는 신선한 채소,과실등의 선도유지 및 고품질화의 소비성이 높아지는 추세로 볼때, 저장기술의 관점에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함으로써 효율적 저장기술을 습득하기 위함과 옥천시설포도시험장 도난방지 및 시설보호를 꾀하기 위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

- 교환재산에 있어서는 청주, 충주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부지 18필지 및 건물 15동과 경찰청소관재산의 24필지에 대해 교환취득 및 처분하는 것으로서 이는 경찰청의 발족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운전면허업무가 경찰청소관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청주, 충주자동차면허시험장의 공유재산을 경찰청소관 재산 24필지와 잡종재산의 교환취득 및 처분으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6. 칙 부

'93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(안)